

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

학생학술경연대회 운영 규정

제정 1999. 9.14

개정 2020.10.20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본 대회는 대한민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학술 연구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, 국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과 국외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생들 간의 교류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2 조(명칭) 본 대회의 명칭은 “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(이하 “대회”라 한다)라 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3 조(대회의 주최 및 주관) 본 대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·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, 한국치과대학·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선정한 대학이 주관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4 조(개최주기) 이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.(신설 2020.10.20)

제 2 장 참가 및 시상

제 5 조(참가자격) 본 대회는 대회 당일까지 국내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팀에 한해 참가자격이 부여되며, 발표자는 1명으로 제한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6 조(수상내용) ① 수상은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으로 구분하고, 수상인원은 대상 1팀, 금상 1팀, 은상 2팀, 동상 2팀으로 한다.(개정 2020.10.20)

②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지급된다. 또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외 학생 프로그램에 참가 발표할 자격이 부여된다.(개정 2020.10.20)

③ 수상내용은 주최기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(개정 2020.10.20)

제 3 장 연구주제 및 발표준비

제 7 조(연구주제) 대회의 연제는 타 기관이나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,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.(개정 2020.10.20)

1. 임상치의학연구 및 이의 응용(개정 2020.10.20)
2. 기초치의학연구 및 이의 응용(개정 2020.10.20)

제 8 조(참가자 의무) 대회에 필요한 발표자료는 참가자 스스로 준비하여야 하며, 참가신청서를 신청 마감일까지 주관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4 장 운 영

제 9 조(대회운영) ① 각 치과대학(원)별로 자체적인 예선을 거쳐 각 학교 대표를 선발하고, 선발된 학교 대표는 참가신청서를 주관 대학에 마감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10.20)

② 주관 대학 및 대회 개최 일자는 매년 한국치과대학·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정하고, 개최 장소는 주관 대학에서 정한다. 본선에서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따라 선임된 심사위원단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발한다.(개정 2020.10.20)

③ 발표 방식은 매년 대회 전 공지한다.(개정 2020.10.20)

④ 발표 시 각 참가자는 10분 이내로 영어로만 발표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10 조(시상) 시상은 대회당일 진행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5 장 심사위원회

제 11 조(심사) 심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·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(이하 '위원회')에서 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12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된다.(개정

2020.10.20)

② 위원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담당 부회장이 맡는다.(개정 2020.10.20)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10.20)

1.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 담당 부회장
2.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 1인
3.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추천한 자(11인 이내)

제 13 조(업무) 대회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및 선정을 주 업무로 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14 조(수상자 선정) 위원회 위원은 별도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의 합으로서 최다득점 순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연 구내용 점수소계가 높은 자로 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표내용 점 수소계가 높은 자로 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15 조(수상자 결정)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최종확인을 거쳐 수상자 선정 및 발표한다.(개정 2020.10.20)

제 6 장 수상자 의무

제 16 조(수상자의무) 대회 대상 수상자는 차기 해외 학생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발 표하여야 한다. 대상 수상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를 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차상급 수상자의 참가를 의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.

제 2 조 후원사 지원 및 준비 사항은 후원사와 협의에 의한다.

제 3 조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된다.